

##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 2023년 제1차 정보자원 통합사업 HW5 사업
- 발주기관(“발주기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제품명 : SFP-10G-SR-S \* 26
- 제조사 또는 공급사(“시스코”): Cisco Systems Korea Limited.

제 1 조(목적) 본 협약은 위 사업에 대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발주자로서 “시스코”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직접 또는 “시스코”的 채널파트너사(이하 “파트너사”)를 통하여, 위 사업의 낙찰자(이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본 협약은 위 사업에 대한 물품공급·기술지원의 목적에 한해 사용된다.

② 낙찰자(발주기관에 대한)가 공급하는 제품이 “시스코”가 제조하는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시스코”는 직접 또는 파트너사를 통하여,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제공하며, 낙찰자에게 제공되는 물품공급·기술지원에 대한 사항은 “파트너사”(또는 시스코)와 낙찰자간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제 3 조(협약금액) 제 2 조의 규정에 따른 “파트너사”(또는 시스코)의 낙찰자에 대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파트너사”(또는 시스코)와 낙찰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며, “시스코”는 낙찰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10,400,000 원(부가세 포함) 이하로 제공할 수 있도록 낙찰자 및 파트너사와 협력한다.

제 4 조(물품공급·기술지원확인서 발급) “시스코”는 본 협약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시스코”는 “발주기관”的 요청에 따라 물품공급·기술지원확인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3년 03월 20일

“발주기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코” Cisco Systems Korea Limited.



(설립자명) CISCO SYSTEMS KOREA LTD.

5F ASEM Tower, World Trade Center  
517, Yeongdongdae-ro, Gangnam-gu,  
Seoul, 06164, Korea

